

1.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 및 수수료	주된 기재 내용	신청에 필요한 것	발급 창구
납세 증명	납세증명서(200엔, 주1) (시민·현민세, 법인시민세, 경자동차세,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특별토지보유세)	세목, 납부해야 할 세액, 기납부액, 납기 미도래 세액 등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종합 창구(본청사 2층) •시민과(본청사 1층) •시민세과 히사이 분실 •각 종합지소 •어스트 플라자 오피스 •(히사이 종합지소 시민과) 시간 외 증명서 발급 등 창구 •각 출장소
	완납증명서(200 엔)	체납이 없음을 증명(주 3)		
	경자동차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 (무료)	차량 번호, 납부일,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또는 자동차 검사증(사본 가능)	
주민세 관련	소득증명서(200 엔)	소득액		
	과세증명서(200 엔)	시민·현민세액		
	소득과세증명서(200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액, 시민·현민세액 등		
고정자산세 관련	평가증명서 (200 엔, 주 2)	토지 가옥의 소재 지번, 면적, 평가액 등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종합 창구 (본청사 2층) •시민과(본청사 1층) •자산세과 히사이 분실 •각 종합지소 •각 출장소
	과세표준액증명서 (200 엔, 주 2)	토지 가옥의 소재 지번, 면적, 평가액, 토지 가옥의 과세표준액 등		
	공조공과증명서 (200 엔, 주 2)	토지 가옥의 소재 지번, 면적,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상당액 등		
	평가액·과세표준액증명서 (200 엔, 주 2)	토지 가옥의 소재 지번, 면적, 평가액, 과세표준액 등		

고정자산 과세대장 사본 (열람) (200엔) [단, 종람 기간 중 납세의무자에 한해 무료]	토지 가옥의 소재 지번, 면적, 평가액,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상당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종합 창구 (본청사 2층) •시민과(본청사 1층) •자산세과 히사이 분실 •각 종합지소
주택용 가옥증명서 (1,300 엔)	주택용 가옥임을 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종합 창구 (본청사 2층) •자산세과 히사이 분실
기타 자산에 관한 증명서 (200 엔)	과세증명서(고정자산세에 관한 것) 등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인 경우)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종합 창구(본청사 2층) •자산세과 히사이 분실

주 1: 납세증명서 · · · 1년도 1세목당 200엔

주 2: 평가증명서, 과세표준액증명서, 공조공과증명서, 평가액·과세표준액증명서 · · · 토지 및 가옥의 물건 10 개까지 1 통당 200 엔

주 3: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신 분은 본청 수세과 (전화번호 059-229-3135)로 문의하십시오.

2. 창구 개설 시간

세무 종합 창구(본청사 2층)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공휴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제외)
시민과(본청사 1층)	
시민세과 히사이 분실(포르타 히사이 3층)	
자산세과 히사이 분실(포르타 히사이 3층)	
각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히사이 종합지소 시민과)	

어스트 플라자 오피스 (어스트 쓰 4층)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제외)
---------------------------	---

(히사이 종합지소 시민과) 시간 외 증명서 발급 등 창구 (포르타 히사이 1 층)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 월 29 일부터 1 월 2 일까지는 제외)
---	---

3. 창구에서 신청하실 때 필요한 것

1. 신청서(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창구에 오신 분의 신분증명서(4. 본인 확인에 대하여를 보십시오.)
3. 수수료
4.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현재 쓰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본인 및 동일 세대의 친족이 아니 자가 신청하는 경우
- 현재 쓰시 밖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본인이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증명서는 개인 단위로 발급됩니다.)

4. 본인 확인에 대하여

쓰시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시에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신분증명서 제시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이 중에서 한 가지	[공공기관이 발급한, 얼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다음에서 한 가지)]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체류카드, 신체장애인수첩 등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얼굴 사진 첨부)
(나)이 중에서 두 가지	[공공기관이 발급한, 얼굴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신분증명서(다음에서 두 가지)] 건강보험증(민간 건강보험조합 등을 포함), 연금증서, 연금수첩, 개호보험 피보험증 등 성명 그 밖의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서류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이 중에서 한 가지와 (나) 중에서 한 가지, 총 두 가지	[신분증명서(다음에서 한 가지)+(위 (나)에서 한 가지)] 법인(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은 제외)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얼굴 사진 첨부) 및 위 (나)에서 예시된 서류 등 성명 그 밖의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서류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서류